

경수로협상의 타결경위와 향후전망

박 성 훈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부단장

대북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해 95년 9월 30일부터 고위급과 전문가급 회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된 협상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양측은,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이외에 기술기준·인도일정·직접접촉문제·통행로 등 많은 쟁점사안에 대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끝에, 구립 15일 경수로사업의 실질적 주도자인 우리측 입장이 대부분 판철된 공급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했다.

대북경수로공급협상에 임했던 우리측의 추진원칙 및 지원준비, 추진현황, 협상 타결의 경위,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본다.

정

부는 이미 93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다면 핵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며, 남북 사이의 다양한 경제협력은 물론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도울 것이라는 입장 을 밝혔다.

이어서 9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핵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지원 등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으며, 아울러 북한에 대

한 경수로 건설지원을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노력을 미·북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낸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추진원칙 및 지원준비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목표를 견지해 왔다.

첫째,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표준형 원자로가 제공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의 비용부담에 상응하게 국제컨소시엄 구성은 물론, 경수로 사업의 설계·제작·시공·사업관리 등 제반 분야에서 우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수로 지원은 미·북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수로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동결 조치와 함께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이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

행과 남북대화 재개 등 미·북한 기본 합의문에서 합의한 사항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 경수로 지원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참여속에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종합적인 대북정책의 구도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차실히 진행시켜 왔다.

추진현황

1. 콜라룸푸르 합의(95. 6. 13)

제네바 기본합의의 서명시(94. 10. 21)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협정을 6개월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94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 미·북간 전문가회의가 3차례 개최되었다.

미·북 경수로협상에서는 경수로 노형과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역할(주계약자)문제가 핵심쟁점이 되었다.

미국은 정치적·재정적·기술적으로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제공과 한국의 중심역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한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한국형 경수로가 북한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난하였다.

제네바 기본합의 후 6개월 경과시 점인 95년 4월 21일에 이르도록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협상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핵동결 해제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미·북 준고위급회담을 열게 되었고, 북한은 여기서 현실적으로 한국표준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95년 5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콜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미·북 준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제네바 기본합의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확인하고 그간의 주요쟁점을 일단 해소하였다.

콜라룸푸르 합의는 노형선정과 주계약자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KEDO 대표의 일원으로 대북협상에 직접 나서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노형과 주계약자를 KEDO가 선정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한국기업(주계약자)이 건설하는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콜라룸푸르 합의발표 당일, KEDO는 서울에서 집행이사회를 긴급개최

(표) 콜라룸푸르 합의(공동언론발표문 요지, 95. 6. 13)

① 2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1,000MWe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로 구성되며, 경수로의 노형은 KEDO 가선정
②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
③ KEDO-북한간 공급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하고, 동 합의가 경수로사업 이행의 기본원칙인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KEDO 설립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로 하고, 그 참조발전소는 울진 3·4호기로 할 것과 주계약자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KEDO 설립협정은 제2조에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노형을 한국표준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2. KEDO 설립 및 본격가동

제네바합의 직후부터 한·미·일간에는 대북경수로 건설지원문제와 관련한 공식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고위급·실무급 등의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한·미·일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의 재정과 공급을 담당할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발족(95. 3. 9)을 주도하였다.

KEDO의 설립 협정에 명시된 KEDO의 목적은,

① 1,000MWe×2 한국표준형 원

전 대북제공사업의 재정과 공급

② 1호기 완성시까지의 대체에너지
공급

③ 기타 제네바 기본합의의 목적수
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곧이어 KEDO는 95년 7월 20일
뉴욕에 본부 사무실을 개설, 한국과
일본의 사무차장들이 부임하여 보스
위스 사무총장과 합류함으로써 공식
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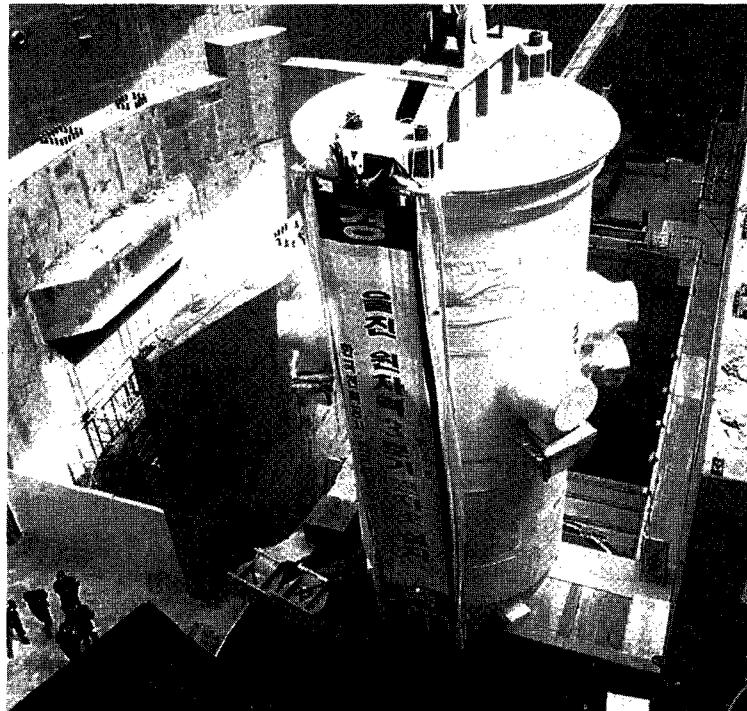
KEDO의 기관으로는 집행이사
회·사무국·총회 및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집행이
사회는 한·미·일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은 전원합의로
이루어진다.

사무국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단은
집행이사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
며, 현재 최영진 차장과 일본인 우메
즈 차장이 보스위스 총장과 함께 총장
단을 구성하고 있다.

총장단은 집행이사회의 지휘·감독
하에 KEDO 사무국의 조직·인사·
예산 등을 관리하고, 대북협상 및 계
약업무 등을 수행한다.

KEDO의 운영경비는 집행이사국
간 1/3씩 분담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나라는 95년도 KEDO 운영비
542만달러 중 180만달러를 납입하였
으며, 이는 주로 직원보수와 사무실
운영, 대북협상 경비 등에 충당되게
된다.

KEDO 사무국은 집행이사국인
한·미·일 3국 정부의 협조하에



대북 경수로자원사업은 우리 원자력산업계의 능력과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사진은 한국표준형 원전인 울진 3호기의 원자로설치 공사.

KEDO 활동의 본격 준비 일환으로,
95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뉴
욕에서 첫 KEDO 총회와 경수로사
업·대체에너지·사용후연료의 3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KEDO의 주요 기관을 모두 구성하였
다.

한·미·일 등 32개국과 유럽연합
(EU) 대표가 참석한 총회는 북핵문
제, 특히 경수로사업에 대한 국제공조
여건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콜라롬푸르합의 이후 본격
구성된 KEDO는 제네바합의에 규정

된 바대로, 대북경수로사업의 재정과
공급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서 북한
과의 경수로협상과 부지조사활동은
물론, 우리측 한국전력공사와의 경수
로 상업계약 체결교섭 등 경수로사업
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 갔다.

경수로사업을 KEDO라는 국제기
구를 통해서 추진키로 한 것은 남북한
직접대화를 기피하는 북측태도에 기
인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될 수도 있는 남북한간의 대립과 충돌
을 완충시키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중
시하였기 때문이다.

3. 경수로 건설 부지조사

활라룸푸르 합의에 따라 KEDO의 제1차 부지조사단이 95년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을 경유하여 평양 및 경수로 건설예정지인 신포지역을 방문하였다.

한·미·일 3국의 전문가 10명과 용역회사 직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신포지역이 부지로 적합한지를 육안조사하고, 러시아가 이미 조사해서 작성해 놓은 자료를 확인·검토함과 동시에 토양·수질에 관한 간단한 표본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신포와 평양에서 북한의 전문가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가졌다.

1차 부지조사 결과 신포지역이 대체로 경수로부지로서 일반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위해 2차 부지조사 단이 95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 까지 재차 방북하였다.

2차 조사단은 전문가 14명(한국 7명, 일본 4명, 미국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질·지진·환경·인허가·시공성 등 3개 분야별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적정 후보지 도출을 위해 몇개 후보지점을 대상으로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집중 조사하고 건설 용이성을 비교·검토하는 한편, 1차 조사때 입수하지 못한 관련 기본자료를 확인·검증하였다.

KEDO는 1·2차 부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포지역내 적정 후보지에 대한 시추작업 등 본격적인 세부조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우리 기술진을 주축으로 한 3차 부지조사단을 추가파견하였다(95. 12. 14~96. 1. 16).

모로 진행된 고위급회의에서, 허종 북측 대표는 제네바협의 1주년이 되는 95년 10월 21일 이전까지는 공급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면서 인위적인 협상시한을 설정코자 시도하는 한편,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KEDO측은 인위적 협상시한 설정과 공급범위 확대 및 상환조건 등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북측에 부담분담원칙(Burden Sharing)을 강조하고 상환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고위급회의에 이은 전문가 실무회의에서는 양측이 마련한 협정문안을 서로 대조하고 포함될 내용들에 대해 항목별로 상호입장을 확인하였다.

KEDO측에서는 보스워스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14명이, 북한측은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를 단장으로 11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KEDO측 대표에는 최영진 차장 등 KEDO 직원 외에 한국정부 대표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관계자가 포함되어, 남북한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협상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다.

그동안 대북 핵협상 또는 경수로협상이 미·북 양자 협상형태로 이루어 진 관계로 우리의 입장은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목되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양측은 상견례를 겸해 전체회의를 가진 후, 95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문가급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다.

KEDO의 총장단을 중심으로 소규

양측은 핵심쟁점으로 대두된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문제는 고위급회의에서 다루고 나머지 문제는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95년 9월 30일과 10월 16일에 각각 전문가회의와 고위급회의를 뉴욕에서 속개하기로 하였다.

나. KEDO·북한 경수로협상(2차)

KEDO는 북한과의 2차협상 재개에 앞서 한·미·일의 전문가들과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뉴욕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공급협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항별 협상대책을 점검하였다.

우리측에서는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관계자 외에 한국전력공사·한국

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KEDO·북한간 2차 경수로협상은 먼저 95년 9월 30일부터 전문가회의를 갖고 95년 10월 16일부터 고위급 회의와 전문가회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공급협정의 기술적·법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를 통해 상호 의견차를 좁혀 나가고, 고위급 회의에서는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등 핵심쟁점을 토의하였다.

두 달여 넘게 진행된 협상에서 KEDO측은 수차례 걸친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에 맞서 원칙에 입각하여 확고히 대처했으며, 북한이 KEDO와의 협상을 깨고 대미협상으로 가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협상 기본전략으로 포괄적 해결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포괄적 해결원칙이란 북한의 무리한 요구, 특히 불완전 합의를 통해 추가 양보요구를 반복하는 소위 분할접근전술(Salami Tactics)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협상목표가 완전히 드러나고 협상의 모든 쟁점에 합의 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95년 10월 16일부터 고위급과 전문가급 회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공급범위나 상환조건 이외에 기술기준·인도일정·직접접촉문제·통행로 등 많은 쟁점사안에 대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끝에,

95년 12월 15일 경수로사업의 실질적 주도자인 우리측 입장이 대부분 관찰된 공급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하게 되었다.

KEDO·북한간 협상에서 북한은 더 이상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비교적 사무적으로 실리적 문제에 중점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협상의 막바지까지 송배전시설, 핵연료성형공장, 항만부두 개선 등의 추가 공급과 흑연로 기투자분 탕감 등 불합리한 요구를 집요하게 하였으나, KEDO측의 일관된 입장, 특히 통상적인 원전건설 관례와 참조발전소인 울진 3·4호기에 기준한다는 우리측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결국은 철회하게 되었다.

5. 경수로협정의 주요내용과 성과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KEDO와 북한간 협상에서는 「한국표준형」 원전공급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핵심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금번 공급협정 체결은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문 이행과정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불요불급하거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배제한 대신, 접촉·통신·통행, 신변안전, 핵사고 책임부담 등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직결된 사항이 경수로사업의 실질적 주

체인 우리측 요구에 따라 확보됨으로써, 향후 경수로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증대 등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공급협정이 국제법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대전제 조건으로서의 북측의 제반 조치사항, 즉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해체, 특별 사찰, 사용후연료 이전 등 제네바 기본합의의 정치적 약속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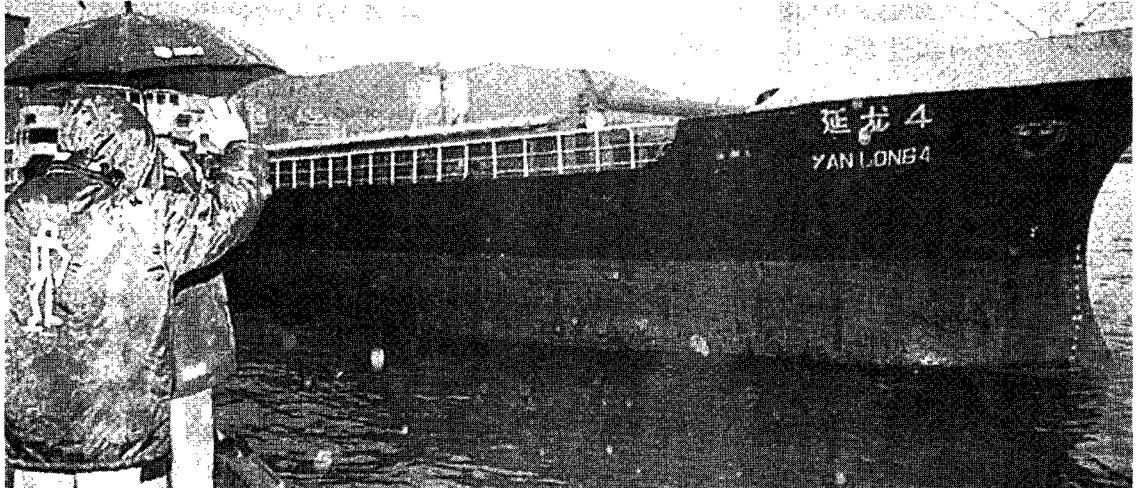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은 국제법적인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급범위

우리측은 경수로원전 건설과 이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한해 부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한 결과, 부지준비, 부지내의 공사용 도로, 공업용수, 공사관련인원 숙소 등 건설개시에 필요한 공사와 냉각수 취·배수용 시설, 바지선 물양장, 수중보를 포함한 양수시설 등 원전운영에 필수적인 사항, 기타 모의훈련대 등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공급하도록 규정되었다.

동 내용중 대부분은 통상적인 원전 건설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세부적 부지조사 결과(도로 및 수로 길이, 골재원 위치 등)에 따라 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가요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에 사용될 국산장비를 실은 연룡 4호가 1월 14일 부산항 제4부두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출항하고 있다.

북한은 당초 「시작부터 끝까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종국적으로는 시운전 전력 등 북측의 부담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서 2」에 동의하였으며, 당초 송배전 시설, 항만시설 개선, 핵연료성형공장, 사용후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나 결국은 철회하였다.

나. 상환조건

당초 북한은 흑연로 기투자분 탕감과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의 확고한 원칙견지에 따라 각 호기별로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무이자)으로 하게 되었다.

다. 한국표준형과 직결된 사항

한국표준형의 문제는 95년 6월 13일 콜라룸푸르 합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KEDO·북한간 협상에서

는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북측과 협상을 가졌으며, 그 결과 기술기준과 인허가 등 원전건설의 세부적 사항에 있어 우리의 국내 원전건설에 적용되는 사항이 사실상 반영되었다.

기술기준은 KEDO선정 노형(한국 표준형)에 적용된 기술기준으로 하며, 인허가절차는 발전소 기초굴착전 건설허가(예비안전심사분석보고서에 기초)와 최초 연료장입 이전시 운전허가(최종안전심사분석보고서에 기초)로 구분하였다.

북측은 당초 원전의 인허가시 북한 법에 따른 자의적 절차를 주장하였으

나. 사실상 우리측 사업의 2대 골격인 안전심사분석보고서에 기초한 허가절차를 수용하였다.

라. 사업진행에 긴요한 사항

우리측은 경수로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항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원칙을 북측의 협상결렬 위험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견지하였다.

그 결과 사업참여자간 접촉과 통신·통행, 사무소 설치문제에 있어 중요한 원칙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통행로는 북측이 지정하되 'KEDO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사업참여자의 부지에 대한 저해받지 않는 통행보장과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 지정(해·공로 등)이 확보되었다.

통신과 관련해서는 기존 통신시설에 대하여 방해받지 않는 이용보장과 KEDO 및 KEDO측 사업자의 독자적

보안통신수단 설치가 허용되게 되었으며, 사무소의 경우 현장사무소 외에 공항 등 직접 관련지역에 추가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간 접촉에 있어서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사업참여자간의 효율적 접촉과 협력을 도모토록 하였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사업 완공에 필요한 모든 허가신청을 신속하게 무료로 처리하며, KEDO와 계약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세금 및 관세를 면제하는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관계자에 대한 신변보장 및 영사보호를 하도록 하였으며, 원전운영자의 핵사고 무과실책임원칙과 배상협정, 핵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전건설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마. 핵활동 관련 의무사항

이번 공급협정에는 북한의 핵활동 관련 미·북 기본합의문상의 제반 의무이행사항, 즉 △ NPT 잔류 △ 핵동결 및 해체 △ 폐연료봉 국외반출 △ IAEA 임시·일반사찰 재개 △ 안전조치 전면이행 등을 경수로공급조건으로 명시하였다.

향후 전망과 과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요소중 하나인 경수로사업의 기본골격이 되는

공급협정이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됨으로써 일단은 힘들고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부터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급협정 체결에 이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적 협조절차, 법적지위, 영사보호, 상환절차, 구체적 공급일정 등 경수로 사업 시행세칙을 위한 KEDO·북한간 10여개 이상의 「별도약정」 체결 협상과 본격적인 부지조사활동, 그리고 경수로 상업계약(주계약) 체결을 위한 한국전력공사-KEDO간 교섭 등 많은 복잡한 사안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아울러 공급협정 체결 후 IAEA와의 협의를 거쳐 비동결 핵시설에 대한 IAEA 임시·일반사찰 재개와 기타 제네바 합의사항의 이행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순조로운 조치도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대북 경수로사업은 일단 KEDO-북한간에 공급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KEDO와 한국전력공사간의 상업계약 체결, 이에 따른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총괄관리와 수많은 협력기업들의 참여하에 설계→제작·구매→시공·건설→시운전의 단계를 거쳐 완성될 것이다.

대북경수로건설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네바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통한 북

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세계적인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 10년 가까운 건설기간 동안 남북간의 인적·물적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발전'의 장을 여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건설착수단계에 들어서면,

- ① 설계·제작·시공·사업관리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기하고
- ② 남북한 직접 접촉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진척에 따르는 남북관계의 가시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 ③ 궁극적으로는 남북협력구도를 정착시켜 「민족공동체」 구현의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경수로사업은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장기적 사업임을 고려,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보고, 국민합의의 유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사업은 우리 원자력산업계의 능력과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경수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